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수금 소멸시효기간 연장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47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환수금 소멸시효기간 연장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 기관 의견	7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54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12. 17.
- (3) 회 부 일 : 2024. 1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환수금 소멸시효기간 연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환수금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현행	개정안
제115조(시효) ① <u>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u> ② ~ ⑤ (생략)	제115조(시효) ① <u>연금보험료 및 그 밖</u> <u>에-----징수</u> <u>할-----</u> ----- ----- ----- <u>등의</u> <u>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u>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할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국민연금법」 제57조제1항¹⁾에 따르면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²⁾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받은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같은 법 제15조³⁾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함.

□ 그런데, 환수금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⁴⁾에 불과하여 공단의 환수금 환수가 제한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온바,⁵⁾

1)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민연금법」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①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안은 환수금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공단의 환수금 환수실적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 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환수금 결정 금액은 총 733억 1,800만원인데, 이 중 6.1%인 44억 9,100만원이 2024년 11월 말 현재까지 환수되지 못하였고,

같은 기간 환수금 미환수 사례 중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하는 경우는 85건으로 그 금액은 총 1억 7,100만원임.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환수금 환수실적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환수 결정		환수		미 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87,529	73,318	86,122	68,826	1,407	4,491
2023년	19,040	18,496	18,419	16,527	621	1,969
2022년	20,504	17,402	20,145	16,233	359	1,169
2021년	16,797	14,372	16,545	13,535	252	837
2020년	16,390	11,325	16,268	10,909	122	416
2019년	14,798	11,723	14,745	11,623	53	100

주: 2024년 11월 30일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환수금 미환수 사유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충당대상	고지대상	시효완성
건수	1,407	927	395	85
금액	4,491	3,245	1,075	171

주: 2018~2023년 환수 결정건 중 2024년 11월 30일 기준 미환수된 환수금 대상 자료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5) 정인영·유현경,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 처리 개선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535-572면.

□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면서, 단기(1년·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고,⁶⁾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⁷⁾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각각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⁸⁾

개별 법률에서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할 때에는 「민법」, 「상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소멸시효기간 규정을 참고하되, ‘진정한 권리관계의 회복 필요성’과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 필요성’ 등의 비교형량을 통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공무원연금⁹⁾·군인연금¹⁰⁾·사립학교교직원연금¹¹⁾ 등 직역

6)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7)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8)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9) 「공무원연금법」

연금과 기초연금¹²⁾·장애인연금¹³⁾ 환수금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으로, 각각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함.¹⁴⁾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¹⁵⁾ 안 제115조제1항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88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0) 「군인연금법」

제5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2) 「기초연금법」

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3) 「장애인연금법」

제20조(시효)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4)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속임수·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등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 구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 관련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및 「고용보험법」 제107조

15)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681면.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환수금 징수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징수 기간 연장 시 환수금 징수가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